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나74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1.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19가소4506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48,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 1) 피고는 C에게 2008. 3. 27. 15,000,000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2008. 1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원고와 피고, C는 2008. 3. 27.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08년 제52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약정이율이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3, 4항 및 구「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30%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여원금을 23,000,000원, 이율을 연 30%로 기재하였다.

나. 1차 청구이의의 소 제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980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액수가 원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되었고, C 및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1) 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변제충당하면 2015. 5.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25,264,535원(= 원금 14,175,123원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089,412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15. 6. 1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5,264,535원 및 그 중 14,175,123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법원 2015나1069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6.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대법원 2016다2324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추심 및 변제공탁 내역

1) 위 판결확정 이후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106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017. 4. 21. 2,728,755원, 2018. 5. 8. 3,271,245원, 2017. 8. 2. 83,000원, 2017. 12. 5. 435,000원을 각 추심하였고, 위 법원 2018타채1178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9. 2.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504,872원을 추심하였으며, 위 법원 2019타채449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9. 4. 9. E으로부터 27,543,971원을 추심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법원 2018타채1178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으로 법무사 보수 220,00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27.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1500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6,262,81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9. 3. 6.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전부를 수령하였다.

라. 2차 청구이의의 소 제기

원고는 2019. 1. 7.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51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는데, 위 1심 사건이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어 2019. 6. 13.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9나63587호 사건에서 위 다항 기재 추심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소요된 집행비용 중 법무사 보수 220,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2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금 23,000,000원에 대한 연 30%의 약정이율은 2008. 4. 27.부터 2008. 11. 27.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연 5%의 법정이율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2019. 2. 26. F으로부터 1,504,872원을 추심하고, 2019. 4. 9. E으로부터 27,543,971원을 추심하여 합계 29,048,843원(= 1,504,872원 + 27,543,971원)을 추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추심금 29,048,84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액수는 원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하 '이자'라 통칭한다)이고, 2015. 5.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25,264,535원(= 원금 14,175,123원 + 이자 11,089,412원)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위 연 30%의 약정이자 부분이 폭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 C 사이에 약정이율을 연 36%로 정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령상 최고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 30%의 이자 부분이 폭리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2015. 5. 21. 이후 피고가 추심하거나 원고가 변제공탁한 돈을 위 잔존 대여금채권에 변제충당하면, 다음과 같다(한편,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6,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7. 4. 21. 추심금 2,728,755원

① 2017. 4. 21. 기준 대여 원금 14,175,123원, 이자 19,244,962원[= 11,089,412원 + 2015. 5. 22.부터 2017. 4. 21.까지의 이자 8,155,550원{= 14,175,123원 × 0.3 × (1+335/365)}]

② 위 추심금 2,728,755원을 이자 19,244,962원에 충당하면, 이자 16,516,207원(= 19,244,962원 - 2,728,755원), 원금 14,175,123원이 남는다.

나) 2018. 5. 8. 추심금 3,271,245원

① 2018. 5. 8. 기준 대여 원금 14,175,123원, 이자 20,966,807원[= 16,516,207원 + 2017. 4. 22.부터 2018. 5. 8.까지의 이자 4,450,600원{= 14,175,123원 $\times$ 0.3 $\times$ (1+17/365)}]

② 위 추심금 3,271,245원을 이자 20,966,807원에 충당하면, 이자 17,695,562원(= 20,966,807원 - 3,271,245원), 원금 14,175,123원이 남는다.

다) 2018. 8. 2. 추심금 83,000원

① 2018. 8. 2. 기준 대여 원금 14,175,123원, 이자 18,697,529원[= 17,695,562원 + 2018. 5. 9.부터 2018. 8. 2.까지의 이자 1,001,967원(= 14,175,123원 $\times$ 0.3 $\times$ 86/365)]

② 위 추심금 83,000원을 이자 18,697,529원에 충당하면, 이자 18,614,529원(= 18,697,529원 - 83,000원), 원금 14,175,123원이 남는다.

라) 2018. 12. 5. 추심금 435,000원

① 2018. 12. 5. 기준 대여 원금 14,175,123원, 이자 20,070,877원[= 18,614,529원 + 2018. 8. 3.부터 2018. 12. 5.까지의 이자 1,456,348원(= 14,175,123원 $\times$ 0.3 $\times$ 125/365)]

② 위 추심금 435,000원을 이자 20,070,877원에 충당하면, 이자 19,635,877원(= 20,070,877원 - 435,000원), 원금 14,175,123원이 남는다.

마) 2019. 2. 26. 추심금 1,504,872원

① 2019. 2. 26. 기준 대여 원금 14,175,123원, 이자 20,602,892원[= 19,635,877원 + 2018. 12. 6.부터 2019. 2. 26.까지의 이자 967,015원(= 14,175,123원 $\times$ 0.3 $\times$ 83/365)]

② 위 추심금 1,504,872원을 강제집행비용(법무사 보수) 220,000원에 우선 충당하면, 변제금 1,284,872원(= 1,504,872원 - 220,000원)이 남고, 이를 이자 20,602,892원에 충당하면, 이자 19,318,020원(= 20,602,892원 - 1,284,872원), 원금 14,175,123원이 남는다.

바) 2019. 3. 6.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변제공탁금 6,262,815원

① 2019. 3. 6. 기준 대여 원금 14,175,123원, 이자 19,411,226원[= 19,318,020원 + 2019. 2. 27.부터 2019. 3. 6.까지의 이자 93,206원(= 14,175,123원 $\times$ 0.3 $\times$ 8/365)]

② 위 추심금 6,262,815원을 이자 19,411,226원에 충당하면, 이자 13,148,411원(= 19,411,226원 - 6,262,815원), 원금 14,175,123원이 남는다.

사) 2019. 4. 9. 추심금 27,543,971원

① 2019. 4. 9. 기준 대여 원금 14,175,123원, 이자 13,543,455원[= 13,148,411원 + 2019. 3. 7.부터 2019. 4. 9.까지의 이자 395,044원(= 14,175,123원 × 0.3 × 34/366)]

② 위 추심금 27,543,971원을 이자 13,543,455원에 충당하면, 이자는 소멸하고, 잔존 변제금 14,000,516원(= 27,543,971원 - 13,543,455원)을 원금 14,175,123원에 충당하면, 원금 174,607원(= 14,175,123원 - 14,000,516원)이 남는다.

3) 위 변제충당 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26. F으로부터 1,504,872원을 추심하거나 2019. 4. 9. E으로부터 27,543,971원을 추심할 당시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이 존재하였고, 2019. 4. 9.자 추심금을 변제충당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일부 남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돈을 추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우, 판사 이민영, 판사 박정운

1) C가 2008. 4. 28.부터 2013. 2. 5.까지 15회에 걸쳐 변제한 6,650,000원 + 2013. 10. 4. 원고 변제금 4,000,000원 + 2014. 2. 13. 원고 변제금 8,600,000원 + 2015. 5. 21. 원고 변제금 1,057,869원 = 20,307,869원